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5337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5337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3. 23 선고 2000나5227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A 담당변호사 강BA)

【피고, 피상고인】 신CA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정BB)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3. 23. 선고 2000나522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1억 원 이하의 대출보증 및 이에 수반되는 신용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인바, 1996. 11. 21. OO기획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소외 최DA로부터 기업운전자금으로 금 30,000,000원을 대출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최DA의 보증채무 잔액확인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달 26. 원고에게 최DA의 위탁보증 취급 가능 금액은 금 100,000,000원인데 위 OO기획이라는 업체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실적이 없으니 최DA의 신용상태 파악에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보낸 사실, 원고는 1996. 11. 27. 최DA로부터 신용보증신청서(갑4호증의 일부로서 위 신청서의 접수일은 위 서면에 기재된 1996. 11. 27.로 추정된다)를 접수받아 피고를 대리하여 최DA와, 그녀의 남편인 신EA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신용보증원금 3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1996. 11. 27.부터 1997. 11. 27.까지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담보로 하여 변제기를 1997. 11. 27. 이율을 연 13%로 각 정하여 금 30,000,000원을 최DA에게 대여한 사실, 그 후 최DA가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고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서(을1호증) 제8조 제1 내지 3항에 의하면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수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신CA기금법, 같은 법 시행령 기타 피고의 업무방법서, 제 규정, 자동신용보증취급요령 및 피고가 통보하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고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피고는 "보증위탁계약위반 면책기준"에 의하여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또한, 피고가 정한 신용보증간이심사기준표에 의하면 최근 1년 이내에 보증신청기업의 사업장 또는 그 대표자 거주 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하여져 있으며 이에 따라 보증위탁계약위반 면책기준 운용 일반원칙(을2호증) 제6-1조 나.항은 원고가 간이심사기준의 심사항목을 위반하여 신용보증을 취급한 경우 피고는 보증부대출금 전액 및 그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위탁보증심사요령에 의한 제출자료기준에 의하면 각종 공부상의 등재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제출자료는 신용보증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여져 있으며, 원고가 이에 위반하여 1개월이 경과한 자료에 근거하여 심사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보증취급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는 보증부대출금 전액 및 그 종속채무를 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한편 최DA는 위에서 본 신용보증 신청 당시 그 소유의 부천시 ○○구 ○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1996. 10. 15.에 발급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고(위 등기부등본에는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원고는 이를 자료로 하여 최DA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였다),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11. 22.자 접수 제99006호로 소외 심DB신용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DA가 그 소유 주택에 1996. 11. 22.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피고가 정한 신용보증간이심사기준에 저촉되는데도 불구하고 최DA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보증업무 취급과정에서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인 1996. 11. 27.로부터 1개월 이전인 같은 해 10. 15.에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기초로 하여 위 심사기준 저촉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피고의 업무처리지침 중 제출자료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면책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한 다음, 위 최DA가 원고에게 신용보증신청을 한 날이 1996. 11. 21.임에도 원고 직원의 착오로 신용보증신청서에 그 신청일을 1996. 11. 27.로 기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신용보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